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2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성일종·최수진·김승수

이종욱 · 김소희 · 고동진

안상훈 · 송석준 · 강대식

이종배 • 인요한 • 장동혁

주호영 · 서범수 · 김상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제18조(조건부면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	
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	
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	
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	
로 하여 면제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	ㅂ}
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u>3명</u>	<u>2명</u> -